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2013. 1

목 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2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3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5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4	제3조(대상시설)	4	제3조(안내표시기준)	6
제4조(접근권)	4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5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7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6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13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7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14
제7조(대상시설)	4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 구성)	10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22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5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11	제8조 삭제	23
제9조(시설주의 의무)	6	제6조의4(회의)	11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7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12		
제11조(실태조사)	7	제6조의6(심의회 운영세칙)	12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7	제7조(적용의 완화)	13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 설치 등)	9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15		
제13조(설치의 지원)	11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16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등)	12	제8조 ~ 제11조 삭제	16		
제15조(적용의 완화)	12	제12조(시정명령)	1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13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4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20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15	제15조 삭제	22	
제18조 ~ 제21조 삭제	16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7			
제23조(시정명령등)	17			
제24조 삭제	18			
제25조(벌칙)	18			
제26조(양벌규정)	18			
제27조(과태료)	18			
제28조(이행강제금)	20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22			

【시행령 별표】	-----	40
【시행규칙 별표】	-----	57
【건축법 시행령 별표】	-----	8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88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7.4.10 법률 5332호 개정 1997.12.13 법률 5453호 개정 1999.1.21 법률 5672호 개정 2003.5.29 법률 6916호 개정 2003.12.31 법률 7040호 개정 2004.12.31 법률 7303호 개정 2005.3.31 법률 7456호 개정 2005.3.31 법률 7476호 개정 2005.1.27 법률 7382호 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개정 2008.3.21 법률 8974호 개정 2010.1.18 법률 9932호 개정 2010.3.31 법률 10220호 개정 2012.5.23 법률 11443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개정 19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 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6호 개정 1999.6.8 대통령령 제16386호 개정 1999.9.29 대통령령 제16559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62호 개정 2005.6.23 대통령령 제18873호 개정 2005.6.30 대통령령 제18931호 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 개정 2006.1.19 대통령령 제19280호 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개정 2007.2.12 대통령령 제19882호 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개정 2010. 6.18 대통령령 제22212호 개정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개정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개정 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 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1호 개정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8.4.11 보건복지부령 제 64 호 개정 1999.6.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개정 2007.3.9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개정 2011.9.2 보건복지부령 제79호 개정 2012.9.4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2.31, 2005.3.31>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삭제 <2005.1.27>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삭제 <2005.1.27>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7.2.1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들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② 삭제 <1999.1.21>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보건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6.8, 2007.2.12> 1. 삭제 <2006.1.19> 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1999.6.8, 2005.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법	시행령	시행규칙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2010.1.18>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	2008.3.3, 2010.3.1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등) ①보 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 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 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 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 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 구성) ①법 제12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 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법 제처·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 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4(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6(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6.2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3.12.31, 2010.3.31>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제18조 삭제 <2003.12.31> 제19조 삭제 <2003.12.31> 제20조 삭제 <2003.12.31> 제21조 삭제 <2003.12.31>	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2.12, 2007.10.15, 2008.2.29, 2010.3.15, 2012.4.17, 2012.12.2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조신설 2004.6.29] 제8조 삭제 <2004.6.29> 제9조 삭제 <2004.6.29> 제10조 삭제 <2004.6.2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대상 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제11조 삭제 <2004.6.29>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4조 삭제 <1997.12.13>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5.23]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2012.5.23>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채어·점자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④ 삭제 <2012.5.23> ⑤ 삭제 <2012.5.23> ⑥ 삭제 <2012.5.23> 제28조 (이행강제금) ①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예고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삭제 <2003.12.31> ⑨ 삭제 <2003.12.31> ⑩ 삭제 <2003.12.31>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제15조 삭제 <2004.6.29>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05.12.30, 2012.9.4>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9.4] 제8조 삭제 <2005.12.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5332호, 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675호, 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개정 1999.6.8>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64호, 1998.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5453호, 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5672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제15817호, 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호, 19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 2005.12.3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9호, 2007.3.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40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7303호, 2004.12.31>(철도사업법)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1 제5호 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부칙 <제16356호, 1999.5.24>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2), 별표 1 제9호나목(1) 단서 및 동목(2),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382호, 2005.1.2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7조제1호·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생략 부칙 <제16386호, 19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table><tr><td>근린공공시설</td><td>근린생활시설</td></tr><tr><td>종교시설·관람및 집회시설·전시시설</td><td>문화 및 집회시설</td></tr><tr><td>판매시설·운수시설</td><td>판매 및 영업시설</td></tr><tr><td>장례식장</td><td>의료시설</td></tr><tr><td>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td><td>교육연구 및 복지시설</td></tr><tr><td>방송·통신시설</td><td>공공용시설</td></tr></table>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관람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장애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관람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7456호, 2005.3.31> (자연공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476호, 2005.3.3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부칙 <제16559호, 1999.9.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 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로 한다. 부칙 <제17824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6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79호, 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호, 201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7> 까지 생략 <48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2호, 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3호, 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부터 <70> 까지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내지 <35>생략 부칙 <제18931호, 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 생략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78호, 2005.7.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칙 <제19280호, 2006.1.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43호, 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5>생략 <17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7>내지 <241>생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9882호, 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3호, 2007.10.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 생략 <13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12호, 201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9호, 2010.7.1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
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
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유치원)

<44>

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734호, 2012.4.17>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체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
라"를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 생략 부칙 <제24061호, 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47호, 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12.8.2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기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별표 2] <개정 2012.8.2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율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제곱미터 이상만 적용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 이상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상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동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공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용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입 접로	출구 근 장 인 용 차 역	애 전 주 구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상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 물로 이루어 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 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 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 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 준으로 산정 하며, 일반 침 실의 경우 출 입구(문)는 권 장사항임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2.8.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 반 행 위 자	근 거 법 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1호	100만원
1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1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법 제27조제2항	10만원

[별표 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부칙 제3조관련)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정비기한	
	법 시행후 2년 이내	법 시행후 7 년 이내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5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 하는 시설에 한함) 및 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 도역사		○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통행 또는 이용에 편리한 접근로·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중 유효폭·기울기 및 유효바닥면적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철도역사에는 해당편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계단을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등의 확보가 지형상 곤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또는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다.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 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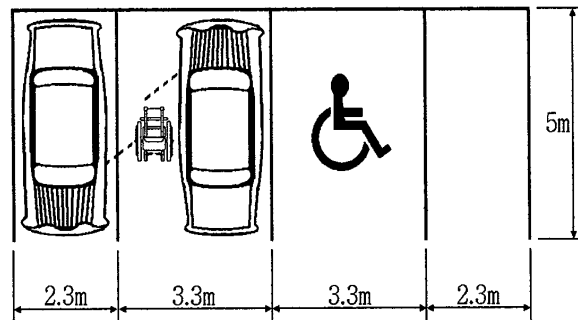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〇〇〇 - 〇〇〇〇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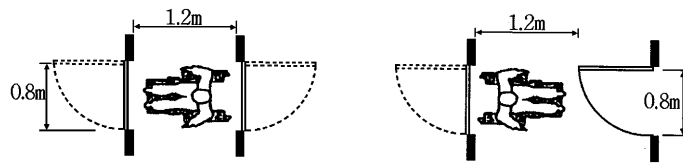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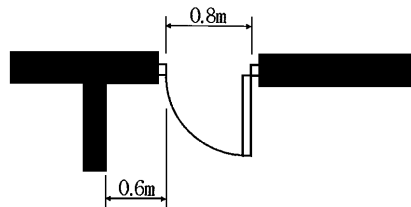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의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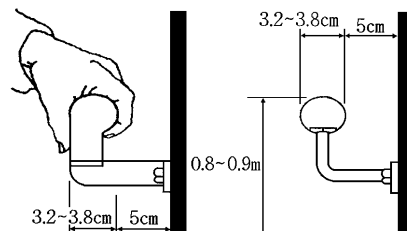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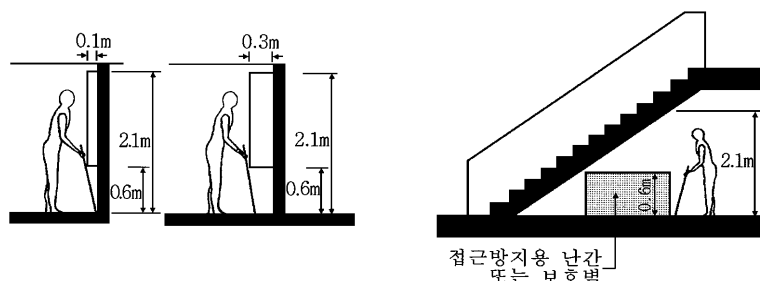
다. 손잡이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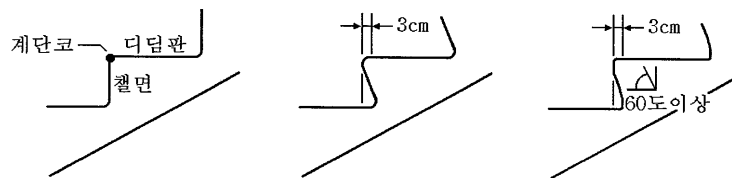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편

-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 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충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는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패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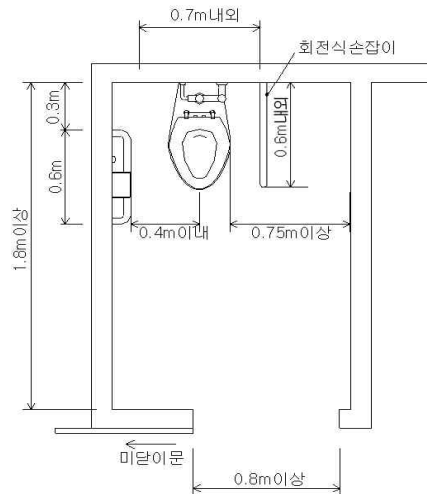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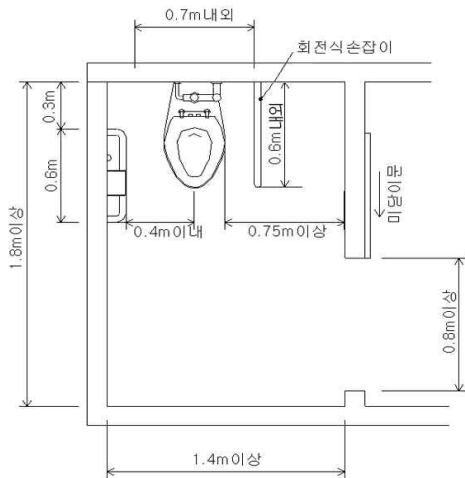
(2) 구 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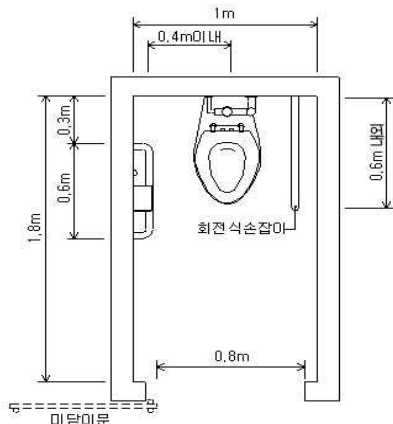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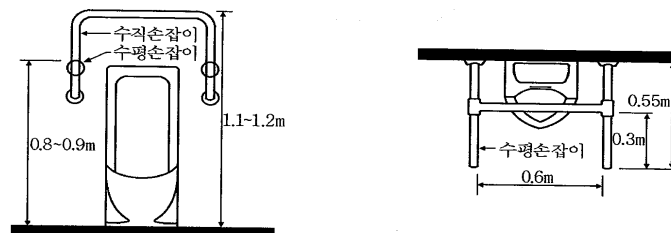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 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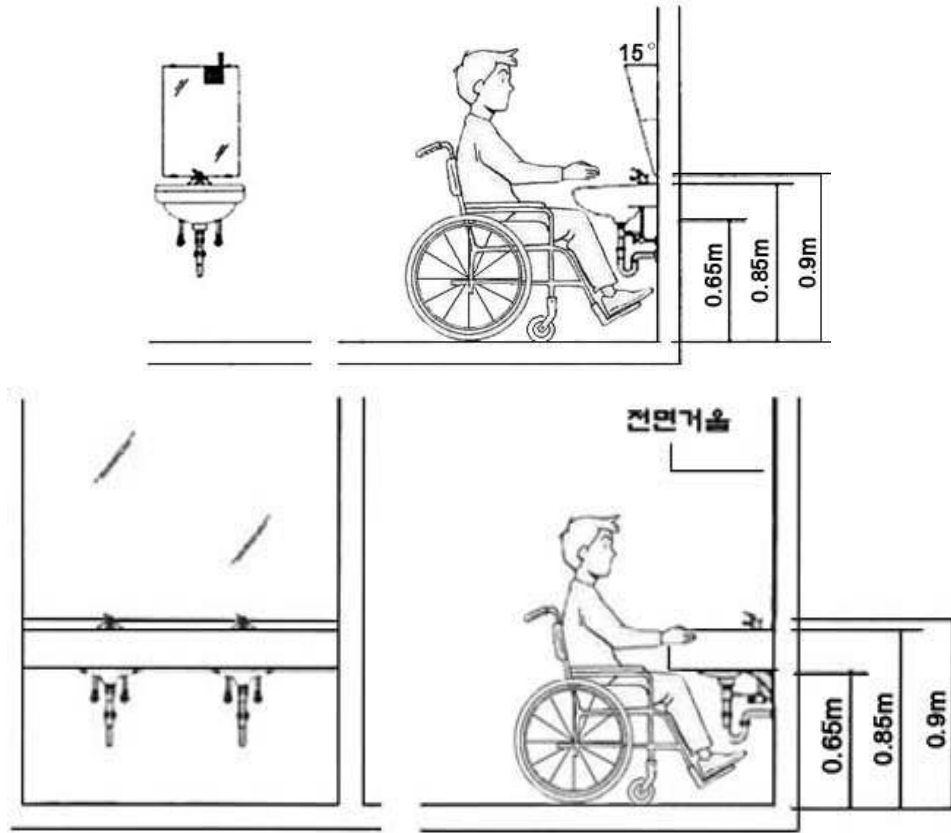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 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 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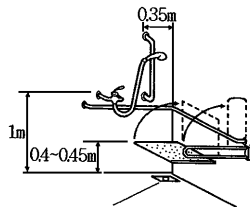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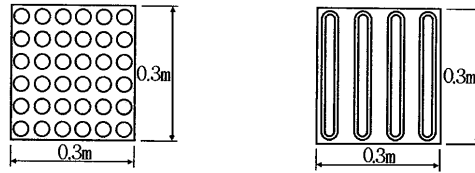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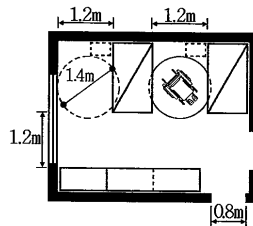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 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 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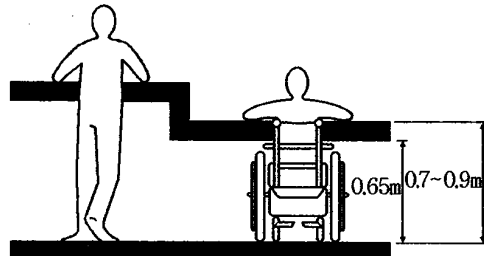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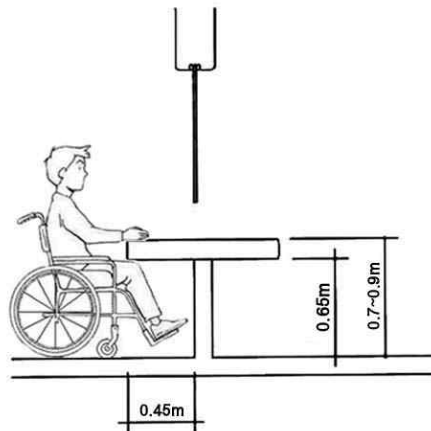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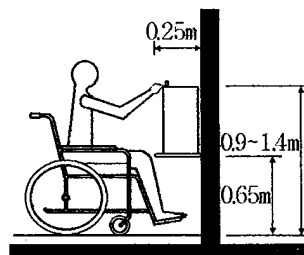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 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1999.6.8>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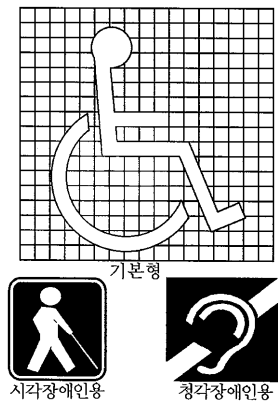
다. 시각장애이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이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대상시설	④종 류 (용 도)					
	⑤소 재 지 (차적지)					
⑥적용의완화 신 청 내 용						
⑦적용의완화 신 청 사 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시 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없 음

31313-20511민

98.3.16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이행강제금처분대장

① 발 행 번호	②납부고지 연 월 일	③성명	④주 소	⑤위반 일자	⑥위반 행위	⑦이행강제 금 액	⑧납부 기간	⑨납부일	⑩비고

31313-20611비

98.3.16 승인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m²)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을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가. 분뇨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삭제 <2012.4.10>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2012.4.10> 마. 삭제 <2012.4.10>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별표 5] <개정 2012.4.10>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I.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과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거주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와 6)의 설비 중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30명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가 및 타에 해당하는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총무: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명당 1명 이상으로 하며, 2명 이상인 경우 1명은 간호사이어야 한다.

마.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바.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사. 사무원: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명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인: 1명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카. 조리원: 시설당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타. 위생원: 시설당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하며,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시설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시설별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제외한다)

1. 설 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인 거주시설(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설에서 시행하려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및 보장구 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재활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류·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과 작업훈련용 기계류·기구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중증의 지적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과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 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재활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및 재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의무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공간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 미숙아 및 전염 가능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재활·보호할 수 있는 관계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남아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단기거주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그 밖에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복지관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2) 공통기준 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필요한 설비
장 애 인 체 육 시 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그 밖에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장 애 인 수 련 시 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명 이상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도서관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자도서 및 녹음 출판시설	(1) 기본설비: 사무실, 재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재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 제본가공용 기구, 제본 작업대, 점자용지 재단기, 종이 절단기

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1) 생산품 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 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 거주시설(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구분 시설별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상 담 평가요원	청 능 치료사	언 어 치료사	보 행 훈련사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이 3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1명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위와 같음			1명
(다)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위와 같음	1명 이상	1명 이상	
(라)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 인을 위한 거주 시설	지 체 장 애 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 한 거주시설 의 경우와 같 음	지 체 장 애 인 을 위한 거 주시설의 경 우와 같음	위와 같음		1명 이상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명 이상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명 이상	
(4)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 3명 이상(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은 I. 공통 기준 제5호를 따른다)					
(5)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입주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사회재활교사의 자격기준은 I. 공 통기준 제5호를 따른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20명 이상

나) 삭제 <2012.4.10>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명 이상

라) 삭제 <2012.4.10>

마) 삭제 <2012.4.10>

바) 장애인 체육시설: 3명 이상

사) 장애인 수련시설: 5명 이상

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3명 이상

차) 점자도서관: 관광,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명 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명 이상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구 분	자 격 기 준
관 장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 급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구 분	자 격 기 준
2 급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급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 급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기 능 직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 용 직	청소·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집원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그 밖의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한다..

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거주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식

거주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점자도서 등)를 갖추어 두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들의 재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 1) 직원 관계철
- 2) 회의록철
- 3) 사업일지
- 4) 문서철
- 5) 문서 접수·발송대장
- 6) 차량 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3) 교육·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비품수불대장
- 5) 비품(장비)대장
-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7.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시설의 개방 운영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가. 시설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 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권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구성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시설의 종사자, 외부 인권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한다.

2) 운영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과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 등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9.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심리적 및 직업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장애인 거주시설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① 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② 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장애인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하는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이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 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따라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시 설 별	재 활 사 업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① 보청기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② 보청기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으로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를 착용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 검사를 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남아 있는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 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행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 등의 활용으로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및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되, 특히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학적 진단 및 재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다음의 사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남아 있는 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 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3) 생활지도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 안정 및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생활지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전인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사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이동 시설거주자 중 남아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이동 장애영유아의 남아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거주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거주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치료, 교육재활, 의료재활, 심리·사회적 재활 등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활동 등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일상생활지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지역사회 체험기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사회적응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해 사회편의시설, 대중교통수단 활용 및 체험교육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직업생활지원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시설 이용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자립지원 그 밖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자격 및 서비스 등은 「의료법」에 따른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재가(在家) 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사업 등 (다) 홍보사업: 홍보물의 제작·배포 (라) 개발사업: 개인·단체별 판로 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 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IV.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 1) 사무실과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 치료(상담)실은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치료사를 겸할 수 있다.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3) 장애인복지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재활치료사	(1)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 해당자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경력 1,200시간 이상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1년 300시간)

3.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시설장 및 재활치료사의 인사카드
- 3) 치료사 관계서류(계약서, 치료사 명부, 자격증 등)

- 4) 서비스 제공 관련철(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 5)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철 등
- 6) 예산서 및 결산서
-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8) 4대보험 가입철, 결제영수증 등
- 9)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기 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근로를 하는 장애인(이하 "근로장애인"이라 한다)의 수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도 근로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과 작업·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명 이상 기숙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시설은 장애인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숙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1), 3), 7), 8), 9) 및 10)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5)·6)의 시설은 한 시설로 다른 시설을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 실

가) 겨울에도 상당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과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기숙하는 근로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마) 기숙사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와 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 샤워 설비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작업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실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4. 직원배치기준

직종명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	1명(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2명 이상인 경우 1명 추가,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 합산)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배치기준: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 이상인 시설 1명 추가 * 위 기준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근로자 18명부터 2명 · 장애인근로자 30명부터 3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	1명	근로인원 30명 이상인 시설에 배치(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다)
생산 및 판매 관리기사	1명	장애인 근로사업장 15명당 1명
	1명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제외한다)
시설관리기사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은 포함한다)
조리원	1명	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	1명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5)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국장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1)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육구 수련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 1) 직원관계철
- 2) 회의록철
- 3) 사업일지
- 4) 문서철
- 5) 문서 접수·발송 대장
-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3) 교육·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비품수불대장
- 5) 비품(장비)대장
-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 2) 자재(원료)구매대장
- 3) 자재(원료)수불부
- 4) 제품수불부
-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 개정에 따른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2012.8.24] [법률 제11443호, 2012.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시설 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는바,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을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43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12.21,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9.4]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2012.9.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르게 되어 이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Tel : 02-3433-0777, Fax : 02-412-0463